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1. 3 선고 2021가단3430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백규하, 이광선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박운병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환수목록 중 환수내역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000여 명을 고용하여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회전익 조종사1)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회전익 조종사들에 대하여 비행수당이 과다 신청수령되었다고 판단하고, 비행운영부서의 조직 관리자들에게 엄중 구두경고 처분을 하는 한편, 일부 조종사 및 기술사에게는 부문장 구두주의 처분을 하였으며, 비행수당을 과다 신청수령한 조종사 및 기술사에 대하여 부당 신청된 비행수당의 환수조치를 진행하였다.

다. 비행수당 환수조치 대상자 18명 중 피고들을 제외한 10명의 조종사 및 기술사들은 환수에 동의하여 2020. 12.부터 환수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환수요청을 거부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6. 1.부터 2020. 2.까지 지급한 비행수당 중 피고들이 ❶ 양산비행을 개발비행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초과지급받은 부분, ❷ 시뮬레이터 탑승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잘못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부분, ❸ 교육 입과 중 탑승한 비행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잘못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부분, ❹ 단순 계산착오로 과다한 수당을 지급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과 같이 부당이득한 비행수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비행수당은 노동관행에 따라 그 지급의무와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서 피고들은 적법한 내용과 절차에 의해 비행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조종사 확보 및 처우개선안(이하 ‘이 사건 처우개선안’이라 한다)을 근거로 피고들이 비행수당을 과다수령했다고 주장하나, 위 처우개선안은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를 규율하는 어떠한 효력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비행수당 지급 및 환수의 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경 마련한 이 사건 처우개선안에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비행수당의 지급 및 환수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6년부터 위 기재내용에 따라 비행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구분			금액(원)	비고
면허수당		조종사	1,000,000	조종업무 수행자로 항공기 면장 취득자에게 지급
		기술사	-	
직무수당		조종사	1,500,000	비행시험 조종/기술사로서 비행업무 수행시 지급
		기술사	300,000	
비행수당	양산 비행	조종사	150,000/1H	조종/기술사 비행실적에 따른 실적급(월 5H 초과시)
		기술사		
	개발 비행	조종사	200,000/1H	개발항공기 비행시험 투입시 지급(월 5H 초과시) 양산/개발비행 각 5H 미만시 합산시간을 양산기준으로 적용
		기술사		

그런데 이 사건 처우개선안은 원고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규범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갑 제4, 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우개선안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직접적 규범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처우개선안에 기재되어 있는 비행수당 관련 내용이 원고와 각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개별 근로계약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각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7조에는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관계법령 및 회사의 제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의 임금관리 협정서 제4조 제2항은 “직무/직책 및 자격관련 제수당은 첨부1 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첨부1 제수당 지급기준은 비행수당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채용시 개별 처우자”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처럼 비행수당은 이 사건 처우개선안의 효력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조건으로 이미 편입되어 있다.

그동안 이 사건 처우개선안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비행수당이 지급되어 왔고, 특히 개발비행수당은 이 사건 처우개선안이 작성되면서 신설되었다. 피고들은 이에 따라 양산비행수당과 개발비행수당으로 나누어 수당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와 각 근로자들 사이에 2020. 7.경 개별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변경합의서는 이 사건 처우개선안에 기재되어 있던 비행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기존에 이 사건 처우개선안의 내용과 같은 비행수당이 개별적 근로조건에 편입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노동관행의 성립 여부

피고들은, 피고들이 신청하여 원고가 지급한 비행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비행수당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써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10,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비행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행수당의 초과지급은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들의 잘못된 수당신청에 기초하여 근거 없이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는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회전익 조종사들에 대하여 비행수당이 과다 신청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곧바로 환수절차를 진행하였다.

비행수당 과다 신청지급된 조종사 및 기술사 18명 중 피고들을 제외한 10명의 조종사 및 기술사는 원고의 환수조치에 동의하였고, 이미 환수절차가 진행되었다.

고정익 조종사들의 경우에는 피고들과 같은 회전익 조종사들과 달리 비행수당 과다 신청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가 2016. 1. 1.부터 2020. 2. 29.까지 51개월 동안 피고들을 포함한 회전익 조종사들의 비행수당 신청에 대하여 918회(18명 × 51개월) 가량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51개월이라는

기간은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양산비행을 개발비행으로 신청하여 초과지급 받은 수당(❶)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행수당이 양산비행수당(150,000원/1H)과 개발비행수당(200,000원/1H)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B, C, D, E, F, I, G가 양산비행에 해당하는 비행에 대하여 개발비행수당을 신청하여 별지 피고별 환수목록 중 환수내역 ❶ 개발/양산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개발비행과 양산비행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피고들이 관리자의 승인 하에 임무의 난이도 및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수당을 신청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3, 8,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발비행과 양산비행은 그 의미 및 개발비행 수당의 신설취지상 개발을 위한 고난이도 성격의 비행은 개발비행으로, 그 외 항공기 납품을 위한 수락시험비행이나 각종 지원비행은 양산비행으로 구분이 가능한 점, 원고의 비행운영기준에도 시험비행 중 개발시험비행과 양산시험비행을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어 피고들은 이를 참조하여 개발비행과 양산비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들은 위 기준은 비행수당 지급 기준과 무관하여 개발비행수당과 양산비행수당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을 해석보충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과 같은 회전익 조종사들이 아닌 고정익 조종사들의 경우에는 양산비행을 개발비행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초과지급받은 사례가 없는 점, 원고가 위 구분이 다소 불명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항공기를 이용한 지원비행 중에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행은 개발비행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에서 제외한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양산비행을 개발비행으로 신청한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그 내역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뮬레이터 탑승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수당(❷)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 D, E, F, I가 실제 비행이 아닌 시뮬레이터 탑승시간에 해당하는 비행에 대하여 비행수당을 신청하여 별지 피고별 환수목록 중 환수내역 ② 시뮬레이터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항공안전법상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을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점, 시뮬레이터에 탑승하는 것은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 점, 다른 항공기관들도 시뮬레이터 탑승에 대한 비행수당을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시뮬레이터 탑승시간은 비행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뮬레이터 탑승과 비행은 개념상 명확히 구분될 수 있고, 비행이 아닌 시뮬레이터 탑승에 비행수당이 지급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원고의 비행승무원 업무수행 절차에도 시뮬레이터 탑승은 개발/양산비행과 구분되는 비행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우개선안에 ‘실제 비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행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비행실적’, ‘비행시험 투입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 비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교육 입과 중 탑승한 비행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수당(③)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 H이 비행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교육 입과 중 비행시간에 대하여 비행수당을 신청하여 별지 피고별 환수목록 중 환수내역 ③ 교육입과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 단순 계산착오로 지급받은 수당(④)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 E, G가 관련 부서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하여 별지 피고별 환수목록 중 환수내역 ④ 계산오류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이득의 액수, 원고의 경영상 이익, 기간의 경과, 원고의 의도, 임금에 대한 사회적 보호필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환수목록 중 환수내역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수당반환청구를 받은 2020.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21.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

피고별 환수목록

순 번	피고 성명	기지금액	환수내역				
			❶ 개발/양산	❷ 시뮬레이터	❸ 교육입과	❹ 계산오류	합계(원)
1	B	261,950,000	10,300,000	7,950,000	0	0	18,250,000
2	C	203,450,000	11,350,000	2,800,000	0	0	14,150,000
3	D	221,550,000	3,950,000	4,450,000	0	300,000	8,700,000
4	E	173,000,000	400,000	1,250,000	4,350,000	250,000	6,250,000
5	F	34,600,000	950,000	4,550,000	0	0	5,500,000
6	G	185,450,000	1,950,000	0	0	1,900,000	3,850,000
7	H	48,500,000	0	0	2,400,000	0	2,400,000
8	I	162,100,000	150,000	1,000,000	0	150,000	1,300,000

1) 원고 회사에는 회전익 조종사와 고정익 조종사가 있다. 회전익은 헬리콥터와 같이 날개가 회전하는 비행기를 의미한다.